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1314 |
|----------|-------|

발의연월일 : 2026. 9. 10.

발 의 자 : 정진욱 · 박균택 · 조인철  
이정문 · 양부남 · 이강일  
정준호 · 이개호 · 문금주  
안도걸 · 장종태 · 김성범  
임문영 · 이훈기 · 강준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의해 5·18민주유공자가 됨으로써 비록 명예를 회복하고 비급여적 보훈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5·18민주유공자들이 곤궁하고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민주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유지와 품위유지도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민주유공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

나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신설 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2(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장의2 보훈급여금

제10조의2(보훈급여금) ① 보훈급여금은 수당과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명예수당
2. 간호수당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제10조의3(민주명예수당) ① 5·18민주유공자에게는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② 민주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간호수당)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장해정도가 심하

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② 간호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사망일시금) ① 민주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을 받고 있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망일시금의 지급액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보훈급여금의 지급) ① 보훈급여금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

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보훈급여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의7(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수당을 받을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수당은 제10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의8(권리의 보호)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

류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2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압류할 수 있다.

제10조의9(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2조의 제목 중 “학습보조비”를 “보훈급여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우를”을 “보상을”로,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를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로, “학습보조비등”을 각각 “보훈급여금등”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학습보조비 등을”을 “보훈급여금등을”로 한다.

제9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예우의”를 각각 “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우를”을 “보상을”로 한다.

제95조의2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학습보조비 등의”를 “보훈급여금등의”로 한다.

2의2. 제10조의2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제97조제2항 중 “학습보조비 등의”를 “보훈급여금등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 제7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lt;신    설&gt;</u> | <u>제1장의2 보훈급여금</u>                                                                                                                                                                                               |
| <u>&lt;신    설&gt;</u> | <u>제10조의2(보훈급여금) ① 보훈급</u><br><u>여금은 수당과 사망일시금으로</u><br><u>구분한다.</u><br><u>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u><br><u>각 호와 같다.</u><br><u>1. 민주명예수당</u><br><u>2. 간호수당</u><br><u>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br><u>는 수당</u>              |
| <u>&lt;신    설&gt;</u> | <u>제10조의3(민주명예수당) ① 5·1</u><br><u>8민주유공자에게는 5·18민주</u><br><u>화운동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u><br><u>여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한다.</u><br><u>② 민주명예수당은 월액으로</u><br><u>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u><br><u>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u><br><u>통령령으로 정한다.</u> |
| <u>&lt;신    설&gt;</u> | <u>제10조의4(간호수당) ① 5·18민</u><br><u>주화운동부상자로서 장애정도</u><br><u>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u><br><u>없이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u><br><u>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u>                                                                                 |

<신 설>

② 간호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사망일시금) ① 민주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을 받고 있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신 설>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망일시금의 지급액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보훈급여금의 지급) ①

보훈급여금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신 설>

보훈급여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의7(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수당을 받을 자가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수당  
은 제10조의5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  
에 따라 지급한다.

<신 설>

제10조의8(권리의 보호) ① 보훈  
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  
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6조,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  
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또는 「특  
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  
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입

<신 설>

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

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  
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  
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  
고 제92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  
급여금을 압류할 수 있다.

제10조의9(보훈급여금의 지급정  
지)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  
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양로  
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  
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  
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  
하는 달까지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2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

라 예우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8조에 따른 보조금,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금,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93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

--보 상 을-----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

-----보훈  
급여금등-----

-----보훈급여금  
등-----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3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

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92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4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  
부장관은 5·18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  
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  
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5·18민주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

보훈급여금을

② (현행과 같음)

제94조(보상의 정지) ① -----  
-----  
-----  
-----  
-----  
-----  
-----  
보상의-----  
-----.

②



|                                                                                                                  |                                                                                       |
|------------------------------------------------------------------------------------------------------------------|---------------------------------------------------------------------------------------|
| 제97조(위임 및 위탁) ① (생략)                                                                                             | 제97조(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학습보조비</u>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br>----- <u>보훈급</u><br><u>여금등의</u> -----<br>-----<br>-----<br>-----<br>-----. |